가정폭력 피해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이 콘텐츠는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이 해당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처에서 벗어나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가정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기 쉽고,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1
1. 가정폭력 4
1.1. 가정폭력 바로알기 4
1.1.1. 가정폭력의 개념 4
2.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8
2.1. 가정폭력의 상담 8
2.1.1. 가정폭력의 상담 8
2.2. 가정폭력의 신고 10
2.2.1. 가정폭력의 신고 10
2.2.2.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11
2.2.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12
2.3.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14
2.3.1.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14
2.3.2. 가정보호 사건으로의 처리 17
2.3.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19
2.3.4. 보호처분 결정 20
2.3.5. 피해자 보호명령 22
2.3.6. 피해자 배상명령 24
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26
3.1. 생계지원 26
3.1.1. 생계지원 26
3.2. 교육지원 28
3.2.1. 아동의 취학지원 및 비밀유지 28
3.3. 의료지원 28
3.3.1. 의료지원 28
3.4. 주거지원 29
3.4.1. 단기 주거지원 29
3.4.2. 장기 주거지원 32
3.5. 법률지원 34
3.5.1. 법률지원 34

1. 가정폭력

1.1. 가정폭력 바로알기

1.1.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가운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폭력의 당사자

▪ 가정폭력 당사자로서의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同居)하는 친족

▪ "가정폭력 행위자(가해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가정폭력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가정폭력범죄

▪ 가정폭력은 다른 형사법규 위반보다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가져오는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구분	가정폭력범죄
상해와 폭행의 죄	-상해, 존속상해(「형법」 제257조) -중상해, 존속중상해(「형법」 제258조)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폭행, 존속폭행(「형법」 제260조제1항 및 제2항)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64조)

유기와 학대의 죄	-유기, 존속유기(「형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 -학대, 존속학대(「형법」 제273조) -아동혹사(「형법」 제274조)
체포와 감금의 죄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형법」 제276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형법」 제277조) -특수체포, 특수감금(「형법」 제278조)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79조)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0조)
협박의 죄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형법」 제285조)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286조)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형법」 제305조)
명예에 관한 죄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사자의 명예훼손(「형법」 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모욕(「형법」 제311조)
주거침입의 죄	-주거침입,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특수주거침입(「형법」 제320조) -주거·신체 수색(「형법」 제321조) -주거침입의 죄의 미수범(「형법」 제322조)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강요(「형법」 제324조)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24조의5)
사기와 공갈의 죄	-공갈(「형법」 제350조) -특수공갈(「형법」 제350조의2) -공갈죄 및 특수공갈죄에 대한 미수범(「형법」 제352조)

손괴의 죄	-재물손괴 등(「형법」 제366조) -특수손괴(「형법」 제369조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그 미수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5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그 밖에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죄

가정폭력의 종류

신체적인 폭력

▪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신체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 외에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어깨나 목 등을 꽉 움켜잡는 것도 신체적인 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꼬집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사지를 비트는 행위,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담배 불로 지지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정서적인 학대

▪ 폭언, 무시, 모욕과 같은 언어폭력으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직접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통제적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의심하는 행위를 하는 것 역시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큰 소리로 소리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말로 공격·협박·위협하는 행위,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희롱하는 행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경제적인 위협

▪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상대방의 재산 사용을 과도하게 통제하여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예> 가정구성원(노인)의 소득,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

성적인 폭력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나 원치 않는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그 밖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방임

▪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한다거나 위험상황에 방치하는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예>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2.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

2.1. 가정폭력의 상담

2.1.1. 가정폭력의 상담

가정폭력 상담

가정폭력 상담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와 그 가족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가정폭력 상담소”라 함)를 통해 가정폭력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조).

- 가정폭력 피해 관련 사항
- 피해자 긴급보호 및 피난처 관련 사항
-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 사항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치료 관련 사항
- 그 밖에 가정폭력 관련 사항

※ 가정폭력 상담소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를 비롯해 경찰청 및 각종 단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관	전화	홈페이지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https://www.women1366.kr/_main/main.html
안전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국번없이 117	http://www.safe182.go.kr
서울남성의전화	02-2652-0456	http://www.manhotline.or.kr
가족센터	1577-9337	http://www.familynet.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http://www.lawhome.or.kr

※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를 통하여 여러 나라의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타갈로그어, 크메르어, 캄보디아어, 우즈벡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 일본어, 영어, 네팔어, 라오스어)로 상담을 받거나, 통역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참조).

상담내용의 비밀엄수

▪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담내용은 법에 따라 비밀이 유지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3호).

▪ 가정폭력 상담은 일반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부부갈등이나 알코올문제 등으로 고민하시는 분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1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단체는 제외)

※ 이에 따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

▪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3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5항).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다음의 기관이나 단체 중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 을 갖추고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정관이나 규약 등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용

▪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또는 상담의 대부분은 가정폭력 행위가 여러번 반복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발생 이후에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다면 장래에 발생할 가정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관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가 대표적이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및 그 가족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및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참조).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	주요 내용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폭력의 재발을 방지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켜 가정폭력을 예방
건강가정지원 프로그램	가족의 이해와 화합을 도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캠페인	가정폭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심각성, 대처방법 등을 알리는 프로그램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되,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가정폭력 위기 상황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구성원 관계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사항
- 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2.2. 가정폭력의 신고

2.2.1. 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의 신고

가정폭력 신고

▪ 가정폭력범죄는 단순한 가정 내 사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가정폭력 신고의무

▪ 다음 기관의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가족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가족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 아동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신고자 보호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

2.2.2.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의 조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응급조치

▪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에게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 폭력행위의 제지
-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피해자의 분리
-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 또한, 이 경우 경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2항).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 경찰은 위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상황이 긴급하여 가해자의 접근 등을 금지시키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위의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경찰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제1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않은 때는 제외)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2호).

2.2.3.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범죄피해자 긴급구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기관

▪ 가정폭력범죄 발생 후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소송대리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조제1호).

기관	전화	홈페이지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263	http://www.moj.go.kr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02-3480-2303~5, 각 검찰청 피해자지원담당실(1577-2584)	http://www.spo.go.kr
경찰청 민원센터	국번없이 182, 경찰청 피해자보호담당관실(02-3150-2335)	http://www.police.go.kr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577-1295	http://www.kcva.or.kr/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http://www.klac.or.kr
대한변호사협회	02-3460-6515	http://www.koreanbar.or.kr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 1366	http://www.mogef.go.kr
경찰서 민원실	각 민원실 또는 대표번호 112	http://www.police.go.kr

<출처: 검찰청 홈페이지-검찰활동-지원활동-피해자인권-범죄피해자지원 개요>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종합보호체계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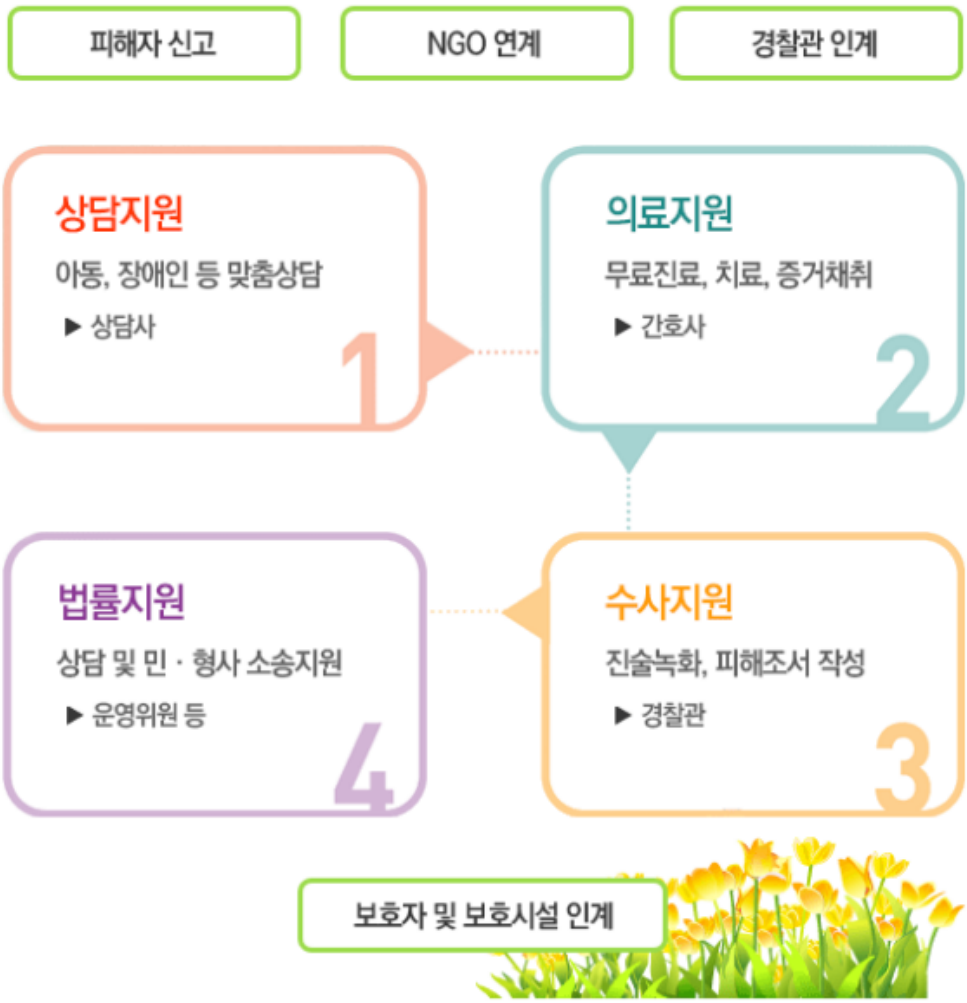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가 여성인 경우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ONE-STOP 지원센터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지방경찰청장, 수탁병원장이 3자 공동협약을 통해 가정폭력 외에도 성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ONE-STOP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보호체계입니다.

▪ ONE-STOP 지원센터에는 여성경찰이 상주하고 전문상담원이 24시간 근무하며, 응급(야간)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고, 상담 및 수사과정에서 반복 진술함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상담지원: 피해자의 심리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실시
- 의료지원: 부인과, 응급의학과(응급실) 등 진료 가능, 필요 시 정신과 연계
- 수사지원: 여성경찰의 진술녹화 등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연계
- 심리평가: 임상심리사가 면담, 심리검사, 행동관찰 등으로 심리평가

법률연계: 무료법률지원단의 법률자문 연계



[출처: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 지역별 해바라기센터의 현황은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메인화면-해바라기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2.3.1.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고소"의 개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및 제224조).

가정폭력범죄의 고소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親族)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 가정폭력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 Q.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
> A.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의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혼을 하려면 별도의 이혼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고소의 방법

▪ 고소는 사법경찰관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참조).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동성경찰에 의한 조사

▪ 성폭력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뢰관계자, 진술조력인 또는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함)로 동의를 받아 이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진술녹화실 등에서의 조사

▪ 경찰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진술녹화실 등 별실에서 조사하여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해자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86조제2항).

신속한 수사

▪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送致)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가정폭력범죄 사건 처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담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의2).

※ 기소유예(起訴猶豫)란 피의사건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었으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전단).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사자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협박죄,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 후단).

▪ 검사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함)에 송치하여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

▹ 만약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2항).

> ※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公訴提起)

▪ 검사는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기소(起訴)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6조).

▪ 법원은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가정보호사건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전단).

▹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후단).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임시조치 청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나 경찰이 위의 임시조치를 하기 전이라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 ※ 임시조치의 청구 및 요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검사의 임시조치 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가정보호 사건으로의 처리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처리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면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

가해자에 대한 처리

▪ 가정보호사건 중 관할 법원으로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구금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가해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래에서 설명하는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후단).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조사·심리의 기본방향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性行)·경력·가정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심리의 비공개

▪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사생활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이유로 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證人訊問)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2항).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 신청인이 이미 심리 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진술로 인하여 심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정한 의견 진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3항).

▪ 위와 같이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진술을 하게 된 피해자는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4항).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역 및 번역

▪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182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임시조치 결정

▪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가해자의 퇴거 또는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 ※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처분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의 2.의 사유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2항).

-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 위의 1. 의 이유로 불처분 결정이 되면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취소되고, 2.의 이유로 불처분 결정이 된 경우에는 이 결정이 확정된 때에 임시조치가 취소됩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45조).

보호처분 결정

▪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 ※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 이 콘텐츠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보호처분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3.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

검사의 임시조치 청구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임시조치 청구

▪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검사는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법원에서 결정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가해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2항).

피해자의 임시조치 요청

▪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먼저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해 주도록 청구하거나 경찰에게 이를 신청해 주도록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3항).

▪ 임시조치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경찰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4항).

신속한 임시조치 결정

▪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신속히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임시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피해자·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심리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11조제2항).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결정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⑤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⑥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위의 임시조치는 중복하여 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27조).

임시조치 기간

▪ 위의 임시조치 기간은 임시조치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5항).

임시조치	임시조치 기간	연장 여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그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개월	2회 연장, 최장 6개월까지 가능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1개월	1회 연장, 최장 2개월까지 가능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가해자의 임시조치 결정 취소 또는 변경 신청

▪ 가해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0항).

피해자의 임시조치 결정 변경 신청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은 위의 ① 및 ②의 임시조치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긴 경우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2제2항).

2.3.4. 보호처분 결정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 결정

보호처분 결정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1.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6.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법원이 보호처분을 내린 경우에는 이미 행해진 경찰이나 검사의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46조제1항).

보호처분 기간

▪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피해자 배상명령

▪ 법원은 보호처분 선고 시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1항).

> ※ 피해자 배상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가정폭력 발생 시 대처방법-가정폭력범죄의 고소-피해자 배상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취소

보호처분 결정 미이행에 따른 보호처분의 취소

▪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의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

1.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보호처분의 변경 및 종료

보호처분의 변경

▪ 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1항).

▪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보호처분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400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제2항).

보호처분의 종료

▪ 법원은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2.3.5. 피해자 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은 중복하여 결정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2항).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 피해자보호명령은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심리

▪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조사·심리할 경우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해자·피해자, 그 밖에 가정구성원의 성행(性行)·경력·가정 상황과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피해자와 가정구성원의 인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19조).

▪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가해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회의 결과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조사·심리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22조).

▪ 사생활의 보호나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및 제32조제1항).

▪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결혼이민자가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통역 또는 번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7, 제34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180조 및 제182조).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및 변경 청구

▪ 법원은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

피해자보호명령의 미이행

▪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 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신변안전조치

▪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전단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4.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 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5.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제5항 후단).

임시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격리조치,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1항).

▪ 임시보호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합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제2항).

▪ 위의 임시보호명령은 필요한 경우 중복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75조).

> ※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은 모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와의 격리 또는 접근금지 등이 주된 내용으로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 둘은 별개의 심리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하게 됩니다.

2.3.6. 피해자 배상명령

피해자 배상명령

배상명령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피해자 배상명령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로부터 치료비와 부양료 등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8항 참조).

▪ 피해자는 법원이 제1심의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할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금전 지급이나 배상(이하 “배상”이라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의 지급
2.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

※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배상액에 관해서도 이러한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제2항).

배상명령 신청

▪ 배상명령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제1항, 제57조제3항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항).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으로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배상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배상신청이 각하(却下)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제1항).

※ 각하(却下)란 소송이나 배상신청을 함에 있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 그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명령 선고

▪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의 결정과 동시에 내려지게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제1항).

▪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지급이 명해지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이 보호처분 결정서의 주문(主文)에 표시됩니다. 이 경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처분 결정서에 적혀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8조제2항).

피해자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명령 효력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적혀 있는 보호처분 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문이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1항).

▪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다른 절차를 제기하여 그 인용금액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제2항).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

▪ 가해자는 보호처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항고는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제3항).

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

3.1. 생계지원

3.1.1. 생계지원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긴급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가정폭력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및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의2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

긴급지원 요청

▪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긴급지원 내용

▪ 긴급지원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교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위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2항).

긴급지원 기간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은 1개월간 지원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그 밖의 지원에 한해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1항).

▪ 의료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교육지원도 한 번 실시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2항).

긴급지원기간의 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전단).

▪ 생계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연료비 등 그 밖의 지원은 첫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 주거지원은 첫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 의료지원은 첫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교육지원은 첫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 후단).

> ※ 긴급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긴급복지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

피해자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

▪ 가정폭력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모(母) 또는 부(父)로서 자녀[18세(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를 양육하는 사람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사람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가출한 사람

▪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합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한부모가족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은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 ※ 한부모 가족의 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한부모 가족』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교육지원

3.2.1. 아동의 취학지원 및 비밀유지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취학 지원

주소지 외 지역에서의 학교 취학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함)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참조).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

▪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자인 아동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인 아동(이하 “피해아동”이라 함)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 초등학교의 장은 가정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감에게 그 피해아동의 전학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켜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전학

▪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아동의 가정폭력 발생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학교장은 피해아동이 다른 학교로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 교육감은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3항 및 제4항).

전학·편입 사실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비공개 관리·감독 의무

▪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하여 아동의 주소지 외의 학교로의 입학·전학 등의 조치한 사실이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5항).

피해아동의 취학·진학·전학 또는 입소 사실 누설 금지 의무

▪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의 사실을 가정폭력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3항).

3.3. 의료지원

3.3.1. 의료지원

치료보호

치료보호 실시

▪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의 치료보호를 실시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나 치료
-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치료보호 비용 청구

▪ 피해자는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미 납부한 의료비 포함. 이하 “치료비용”이라 함)을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 치료비용 청구는 의료기관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시도, 시군구에 청구하면 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474).

▪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가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가정폭력피해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치료비용 구상권 행사

▪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치료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본문).

▪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단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수급자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

> ※ “구상권(求償權)”은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3.4. 주거지원

3.4.1. 단기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임시거처 이용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보호시설

▪ 피해자는 임시거처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서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은 “숙식의 제공” 외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1.부터 5.까지의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보호시설 입소

▪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 또는 그 가정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

-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사람
-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한 사람
-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일반보호시설에 입소가 어려운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피해자(1순위), 자녀를 동반한 피해자(2순위) 또는 가정폭력피해자(3순위)의 경우에는 가족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399).

※ 가정폭력 보호시설의 입소는 여성긴급전화(☎ 1366) 및 각 지역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통해 입소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연락처는 성평등가족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정폭력방지 관련 시설정보에서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의 보호기간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이내(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잠깐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0).

▪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종류	보호기간	비고
단기보호시설	6개월 이내 (최대 1년)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3개월의 범위에서 2 차례 연장 가능
장기보호시설	2년 이내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
외국인보호시설	2년 이내	* 입소대상 : 외국인 피해자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 입소대상 : 장애인인 피해자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 피해자가 위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증명서(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를 제시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별지 제14호의3서식).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장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3.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7.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8.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9.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10. 보호조치를 실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11. 임시조치·보호처분·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2. 임시조치·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13.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지서

14. 사건결정결과 증명서

15. 수사결과 통지서

16. 확정된 법원 판결문 사본

▪ 다만, 위의 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단서).

>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을 교부가 가능한 경우
>
>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9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
> 1.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조치(이하 “제한조치”라 함)를 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 2. 세대원 또는 직계존비속[세대원 또는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한대상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함]이 자신에 관한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인은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3. 제한대상자가 제한신청자의 등·초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서 제한대상자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한조치를 하지 말 것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 중 그 주민등록지가 제한신청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와 동일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3.4.2. 장기 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

▪ 정부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05).

입주자 선정

▪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입주 우선순위에 해당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09).

구분	입주대상
입주 우선순위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 순위를 결정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09).

입주 비용

▪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은 면제되나, 입주 시에 입주자 부담금을 70만원의 범위에서 1회 납부(퇴거 시 반환)해야 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08).

▪ 관리비 및 각종 공과금은 인근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 수준으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08).

입주 기간

▪ 신규 입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해 2년 연장 가능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10).

입주 신청

▪ 입주신청자는 운영기관에 주거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08 참조).

임대주택의 지원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입주 신청 자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 4. 제2호 우선공급 나. 노부모 부양,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9) 및 제1호].

임대주택 규모	입주자격
50㎡ 미만	1.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인 사람 2. 1.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50㎡ 이상 6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인 사람
60㎡ 초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하인 사람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피해자는 위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퇴소한 사람은 제외)

▹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입주 신청

▪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피해자는 입주 신청에 필요한 증거서류(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 확인서, 성평등가족부의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의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 사실확인서 중 택1)를 발급받은 후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에 따라 해당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424).

> ※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콘텐츠의 <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우선공급 입주자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 법률지원

3.5.1. 법률지원

법률구조

법률구조 대상자

▪ 가정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민사·가사사건 외에도 형사사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7조제2항제11호 및 「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6호).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려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합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법률구조 안내 참고].

무료법률구조 신청

▪ 무료법률구조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신청하면 됩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99 참조].

▪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관련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100).

- 가정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발급)
- 진단서(가정폭력에 의한 상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 진단서)
- 고소장 사본 및 고소장 접수증 등

※ 무료법률구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범죄피해자』 콘텐츠 <각종 지원-지원요청-법률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